

의안번호	제 118 호
의결년월일	1996. 11. 25.
의결사항	권안가결

발의자	류정은의원외 3인
제출년월일	1996. 11. 2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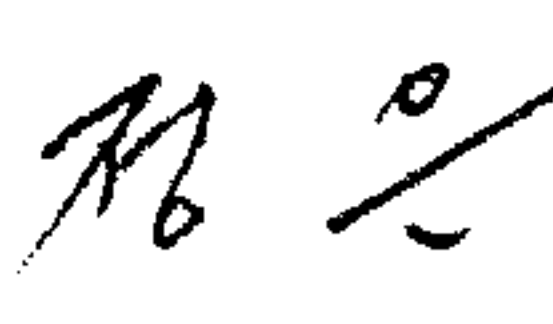
9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

수 신 : 의 장

제 목 : '9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구성의 건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불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

불 임 : 안건 1부. 끝.

발 의 자 :   (한)

(찬 성 의 원 서 명 : 불 임 참 조)

◇ 제 안 설 명

제59회 보은군의회 정기회에서 실시할 '9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9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수는 의장을 제외한 10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9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제안합니다.

